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13
----------	-------

발의연월일 : 2025. 8. 6.

발 의 자 : 성일중 · 고동진 · 유용원

김미애 · 이현승 · 강선영

한기호 · 백종현 · 윤상현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및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산업 분야의 핵심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특정 정당에 소속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사람은 제4항제5호</u> <u>및 제6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u> <u>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이 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사람인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u> <u>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u> <u>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u> <u>아니한 사람</u> <u>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u> <u>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u> <u>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u> <u>니한 사람</u>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